



2018년 다함께 돌봄사업 안내

Contents

■ 제1장 ■ 사업 개요	1
1. 목적	1
2. 추진방향	1
3. 근거	2
4. 추진체계	2
■ 제2장 ■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4
1. 설치 기준	4
2. 시설·설비 기준	5
3. 인력 기준	6
■ 제3장 ■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9
1. 대상 아동 선정	9
2. 운영시간	10
3. 서비스 내용	11
4. 사업 운영 모형(예시)	13
5. 시설 운영 관리	15



■ 제4장 ■ 다함께 돌봄센터 예산지원 절차	16
1. 국고보조금 예산 지원	16
2. 재정관리	18
■ 제5장 ■ 다함께 돌봄 평가	19
1. 목적	19
2. 준용 규정	19
3. 개요	19
■ 제6장 ■ 협조사항	20
1. 지자체	20
2. 다함께 돌봄센터	21
[서식]	22

제 1 장 사업 개요

1 목적

-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지역 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
 -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2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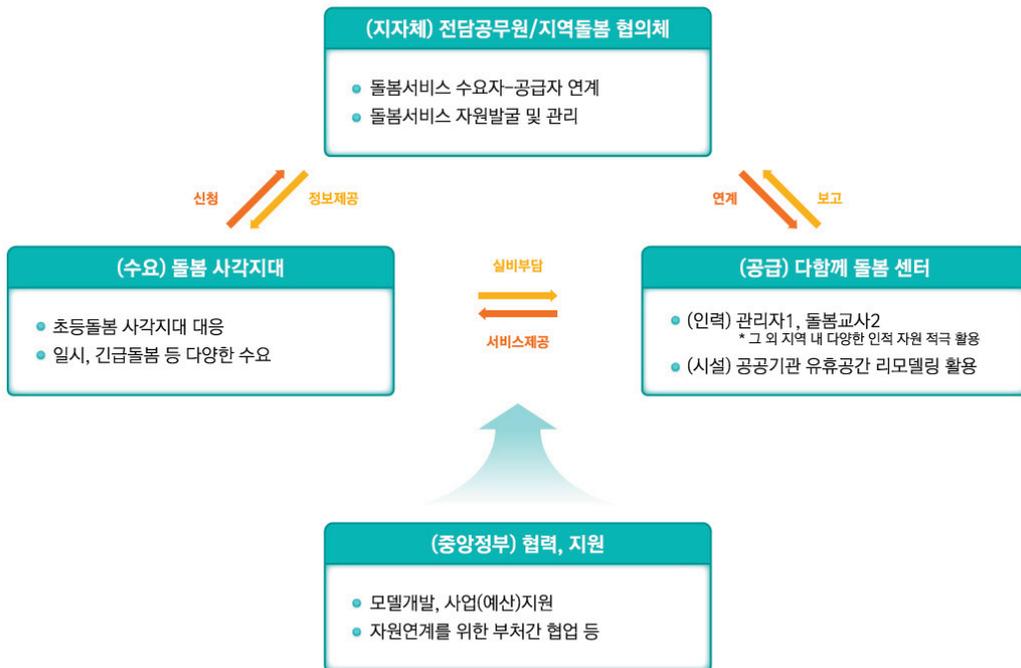
- 다함께 돌봄은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의 거점 기능을 수행
- 지역 아동 돌봄을 위한 공공/민간 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가 다함께 아동을 키우는 자율적이고 유연한 체계 운영
 - 아동 및 가족의 여건·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돌봄 서비스 이용 배치 및 연계
 - 지역사회 주도의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일시·긴급 돌봄, 등·하원지원, 간식지원, 자녀돌봄 관련 상담 등 제공 서비스 자율적 운영

3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와 6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 의무가 있음
 -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4항, 5항 및 동법 시행규칙 21조를 따름
 - 종사자 관리 및 회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름

4 추진체계

- (중앙정부) 다함께 돌봄 사업 계획과 표준모델(안)을 지자체에 제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인건비 예산 지원
- (지방정부) 지역 돌봄수요와 지역자원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초등 저학년은 필수), 서비스내용(일시·긴급 돌봄, 등·하원지원, 간식 제공 등), 사업추진방식(직영, 위탁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
 - (사업추진) 지자체 장이 주재하는 민·관 참여 협의체(지역돌봄 협의체 등)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방향 설정 및 자원 활용 적극 지원
 - * 지자체 돌봄 수요자 규모·특성 및 돌봄 인프라 파악·관리, 사각지대 진단 및 다함께 돌봄 제공 전략 수립
 - (사업관리 및 지원) 욕구조사·자원연계·정보제공·안전관리·홍보·교육·관련예산 집행 등 사업관리 및 지원
 - * 다함께 돌봄센터 지정·리모델링(안전중점) 지원, 만족도 조사 등 사후관리, 자원봉사·재능 기부 등 지역자원 연계 지원, 돌봄인력 질 관리 등



제 2 장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1 설치 기준

가. 설치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내의 아동 돌봄 욕구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함께 돌봄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근거하여 다함께 돌봄 센터를 설치·운영함

나. 명칭

- 다함께 돌봄센터의 명칭은 “OO시·군·구 다함께 돌봄센터”로 표기
 - － 다만, 해당 지자체의 고유사업 명칭이 있는 경우 병기 가능
 - ※ 예) 경기도 OO시 다함께 돌봄센터(OOO 돌봄놀이터)

다. 시설 입지 조건

- 다함께 돌봄 센터는 쾌적하고 안전한 입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축물 및 안전 등에 관한 법령 준수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제14조에 따른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 이 외의 건축물 용도 구분은 시·도 및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조 필요
 - ※ 상가 내 노래방 및 주점 등이 있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원칙적으로 설치 불가

- 시설 50m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 선정

* 위험업소로부터 수평거리 50m 기준

2 시설·설비 기준

가. 시설기준

- 공공시설*, 마을회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등 접근성이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 리모델링

* 주민센터·문화센터·복지관·도서관·보건소 등

- 센터는 아동이 학교 혹은 집에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안전을 위해 지하나 반지하, 4층 이상인 곳 설치 지양

- 시설은 사무실과 대규모 활동실*, 소규모 활동실** 등으로 구성

* 도서실, 대그룹프로그램, 체육활동 등이 가능한 공간

* 숙제지도, 언어활동, 보드게임 등 소규모 활동이 가능한 공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에 근거하여 건축물 유지·관리와 소방안전관리 점검시 문제가 없는 시설

- 다함께 돌봄센터의 시설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이고, 아동 1인당 전용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노력

* 아동 정원이 20명인 경우 시설 공간은 66제곱미터 이상 설치 권고

나. 설비기준

- (안전 설비) 건축물의 구조 및 소화 기구 등의 설치는 근거법 준용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근거하여 아동 관련 시설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고,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해야 함(제14조의 2)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갖추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함
- 화재 예방 및 안전을 위한 화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은 필수로 하며,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 관련 법규에서 필수로 규정한 사항 이외 물품 비치 여부는 자율 결정
 - ※ 응급조치 가능 비상약품, 구호설비·기구, 위험표지물 등 안내문, 비상시 대피경로에 대한 유도등 등

● (돌봄 설비) 시설 필수 물품 및 아동 보호를 위한 기타 물품 비치

- 정서적 안정 도모, 편안하고 아늑한 시설 환경(매트, 책상, 도서 및 책장, 수납공간, 게시판 등) 및 학습병행 교재교구 구비
-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시 냉장고, 청소기, 소독기,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음용수대, 의약품, 온도습도계 등의 물품 구비
- 이 외 CCTV, 아동 출석용 지문시스템, 비상벨, 인터폰 등은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여부 결정

3 인력 기준

가. 종사자 배치

- 관리자 1인과 돌봄교사 1인을 필수 인력으로 배치하되, 이용아동 수, 운영 시간 등을 고려하여 돌봄교사 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관리자 혹은 시간제 돌봄교사가 교육 및 휴가 등으로 부재 시 이용 아동 수에 관계없이 대체인력(활동교사 등)을 배치하는 등 반드시 성인 2인 이상 돌봄 공간에 있도록 해야 함

나. 종사자 자격 기준

● 직종별 자격 기준을 갖추는 것을 권장하며, 법령에 명시된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12, 부칙 제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및 제35조제2항

■ 모든 종사자는 신원 증빙, 아동 학대 및 성범죄 이력 조회, 건강진단서 제출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3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을 조회하여야 함

※ 건강진단서(취업용)는 보건소에서 가능

직종별	자격기준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법」 혹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 「교육법」에 근거하여 교원자격증을 받고 3년 이상 학교·학원 등에서 종사한 경력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보육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시간제 돌봄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자 - 「교육법」에 근거한 교원자격증 소지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 - 그 외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육아품앗이 등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고, 이를 증명(경력증명서 등)할 수 있는 자 - 단, 영어, 미술, 체육 등 아동의 다양한 놀이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특기자의 경우 반일제 채용 가능(단, 졸업증명서 혹은 인증서 제출)
활동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 강사, 육아품앗이, 아이돌봄서비스, 지역주민 및 학부모 자원봉사, 대학생 봉사활동 및 사회복지실습생 등 - 단, 활동교사가 사회복지 및 보육교사, 교원자격증 미소지자인 경우 돌봄 교육 이수 필수 * 교육과정은 '19년부터 개설·운영(시작 전 의무 교육 1회, 보수 교육 1회 선택)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다. 채용기준

- 다함께 돌봄센터의 종사자(관리자 및 돌봄교사) 신규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것으로 하되, 2018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라 취업취약계층 및 장년·청년층 우선 선발 가능
- *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 및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만 55세 이상 장년층, 청년층 등

제 3 장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1 대상 아동 선정

가. 이용대상

- 만 6세~12세(초등학생)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
 - * 소득수준과 무관
- 정원은 인력 및 이용 시설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이용아동수(정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입소 우선순위

- 센터 이용아동 신청이 많은 경우 입소 우선순위를 지역 여건에 따라 정하여 결정할 수 있음
 - * 입소 우선순위 :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필요시간,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구 등
 - * 돌봄 필요시간 : 상시 돌봄(종일돌봄, 시간제 돌봄), 일시돌봄(긴급돌봄 포함)

다. 돌봄서비스 연계

- 기존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 후 다른 돌봄서비스를 추가 이용하는 경우 타 서비스 중복으로 인한 시설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연계 협의서 작성
 - (방과후 돌봄 연계) 지역 내 초등돌봄교실·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지역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 협의회와 연계
 - (협의서) 개인별 돌봄 이용 형태 및 연계 이용에 대한 협의
 - ※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돌봄 서비스 간 연계 시간 및 연계 방법 명시

2 운영시간

가. 상시돌봄

- (시간제 돌봄) 시간제 돌봄은 종일 돌봄의 운영 시간 내에서 결정
 - 시간제 돌봄*은 정규적인 단시간, 혹은 정규적인 요일별 이용에 해당함
 - ※ 예) 매일 5시간 미만 이용, 매주 월수금 3시간 이용 등
 - 아동이 5시간 미만 이용시 간식 지원이 원칙이나, 식사 시간 혹은 식사 돌봄이 필요한 경우 종일 돌봄 아동과 함께 급식 이용 가능

- (종일돌봄) 센터 운영시간은 아동별 돌봄 필요시간 등 지역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
 - 아동별 돌봄 수요 및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평일, 주말, 방학기간 운영 시간을 운영위원회 등에서 결정
 - 오후 8시 이후에도 연장 운영은 가능하나, 아동의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할 것
 - 종사자의 근무시간은 1일 최대 8시간(휴게시간 제외)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아동이 4시간 이상 이용시 급식*에 대한 계획 수립 필요
 - ※ 식사 준비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자원봉사, 자활사업단 및 인근 반찬가게 이용, 식당 정기 이용 등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학부모 동의 필요

나. 일시돌봄

- 학교 휴업, 이용자의 긴급사유 발생 시 돌봄 제공
 - 비정기적이며 아동의 일시·긴급 사유 발생 시 돌봄 제공
 - 평일 운영이나, 주말 혹은 방학 중 일시 돌봄 요구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우 운영 시간 확대 및 정원 확대가 가능하나, 종사자 배치 및 공간 기준 준수 필요

구분	돌봄 프로그램 예시
유형1	[지역 공공 시설 활용] - 지역 내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원 등 마을 문화 자원 활용 * 전국 문화시설, 주민자치단체, 사회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지역 주민의 문화감수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서비스 증진을 위한 활동, 지역 내 문화예술 지원 파악 및 문화자원봉사 활동화 등 - 지역 내 수영장, 게이트볼장, 실내체육관 등 체육 자원 활용
유형2	[지자체 문화센터 및 아파트 체육 강사 활용] - 지자체 문화센터 및 아파트 생활 체육 강습 활용 * 어린이 요가 및 발레, 농구 및 야구, 줄넘기, 배드민턴 등 * 비용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보조 가능
유형3	[학부모 자원봉사 및 지역 유휴 인력 활용] - 일반 봉사: 인형극, 파워포인트 작성, 요리 체험 등 - 전문 봉사: 화재 예방 교육, 드론 조작, 어린이 교통 안전 등

3 서비스 내용

가. 돌봄 프로그램 운영

- 다함께 돌봄 수요 조사에 따른 제공 서비스와 활동 서비스를 기준으로 운영 위원회 등에서 돌봄 프로그램을 결정
- 필수 활동을 기본으로 제공하되, 특별활동의 경우 전문능력을 갖춘 활동 교사의 섭외 등에 따라 결정
 - 일부 프로그램 운영은 이용자 부담 가능(월 10만원 이내)

나. 아동별 계획 수립

● 아동의 이용 시간을 고려하여 아동별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시간제 돌봄) 이용 가능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공하되, 부모 협의 필요
- (종일 돌봄) 가급적 필수 활동은 모두 제공하되, 활동 교사 및 전문가 섭외 등을 고려하여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에 특별활동 제공

구분	활동분야	활동내용	서비스 제공 주체
필수 활동	아동지원	- 일상생활교육 (위생청결교육, 화재 및 안전교육) - 아동 및 학부모 상담	돌봄교사 중심으로 운영하되, 센터장 및 활동교사 지원
	독서지도	- 독서지도 (읽기, 말하기, 쓰기 등) - 독서활동 프로그램 운영	
	놀이활동	- 신체놀이 (줄넘기, 자전거, 배드민턴, 축구 등) - 도래놀이 (놀이터, 민속놀이, 인형극 등)	
	쉬기	- TV보기 (EBS 교육방송, KBS 2TV 등 교육적 내용) - 휴식 취하기	
특별 활동	기초 외국어	- 기초외국어어지도 (읽기, 말하기, 쓰기 등) - 외국어활동 프로그램 운영	분야별 전문 소양을 갖춘 활동교사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센터장과 돌봄교사 지원 (단, 특별활동 내용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부합하여야 함)
	예체능	- 예체능활동지도 (음악, 미술, 체육 등) - 예체능활동 프로그램 운영	
	과학	- 과학 지도 (드론, 로봇, 과학 상자 등) - 과학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체험활동	- 문화예술 체험 (영화, 난타, 박물관, 시장 등) - 문화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요리, 화훼 등)	

4 사업 운영 모형(예시)

구분	사 업 예 시
A다함께 돌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대상/ 이용시간) 초등1학년~3학년/ 오후3시~저녁7시, 필요시 주말 ▶ (서비스 내용) 3시 이후 초등 저학년 대상 방과후 돌봄(숙제봐주기, 미술·음악활동 등) 및 프로그램 운영(현장학습 등), 요청시 맞벌이 출근시간 일시 돌봄 및 퇴근시간대 일시 돌봄 서비스 제공, 등·하원 지원(부모 품앗이방식 활용) ▶ (공간) 지자체 운영비 지원으로 아파트 관리동 1층을 무상 임대 ▶ (운영주체) 아파트 내 부모자조조직으로 운영 ▶ (인력) 센터장 1명, 시간제 돌봄교사 2명, 그 외 자원봉사나 재능 나눔, 건강가정지원 센터의 교육 강좌 및 강사지원 활용 ▶ (재원) 지자체 운영비 지원, 회원제로 운영(100명, 정규 30명+일시 돌봄 70명), 프로그램 운용비는 실비(정규 월3만원), 필요시 부모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비용 각출
B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대상/ 이용시간) 일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아동 및 부모 ▶ (서비스 내용) 자녀 일시 돌봄(아이돌보미 활용 등), 초등학생 대상 현장학습, 체험학습, 체육활동, 문화활동, 이야기 할머니 구연동화, 논술·미술 등 프로그램 운영 등 ▶ (공간) 어린이도서관 1층 유휴공간(117㎡)를 리모델링하여 활용(북카페, 공부방 및 육아 공간, 무대설치 등) ▶ (운영주체) 마을주민운영위원회(연령대별로 구성) ▶ (인력) 지역주민 재능기부, 아이돌보미 활용, 프로그램 연계(이야기 할머니 등), 논술·미술 등 전문 프로그램은 강사초청(자부담) * 돌봄서비스 제공인력 : 30명 정원에 3명(전일제 1명, 시간제 2명) ▶ (재원) 도비, 시비, 이용료(월 10만원), 기부물품* * 인근 도서, 상점·은행지점 등으로 부터 다양한 물품 지원
C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대상/ 이용시간) 8세~12세 맞벌이 가정 아동 ▶ (서비스 내용) 부모 퇴근시까지 돌봄서비스 제공, 초등저학년 하원(하교)후 돌봄 및 간식 제공(1시~부모귀가시), 학원 연결 서비스, 간단한 숙제나 학습 도우미, 놀이지도 등 ▶ (공간) 아파트 커뮤니티센터(1층) 리모델링하여 활용 ▶ (운영주체) 마을협동조합 ▶ (인력) 단지 내 입주주민(42명) 재능기부 ▶ (재원) 시비(8천만원), 이용료(돌봄 시간, 서비스 관계없이 월10만원)

구분	사 업 예 시
<p>D마을 (농어촌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대상/ 이용시간) 만 8세~12세 이하 아동 / 16~19시 ▶ (서비스 내용) 초등저학년 하교 후 일시 돌봄, 등·하원 도우미,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할아버지·할머니, 아동이 함께하는 미술·독서·체육활동, 바느질교실, 한자·서예 교실 등), 저녁도시락 지원, 모퉁이 도서관운영, 출산 및 육아관련 서비스(주민복지실, 보건소, 보육기관 등) 연계 ▶ (공간) 사회복지타운 내에 소규모 도서관 설치·운영 ▶ (운영주체) 민간위탁(사회복지법인) ▶ (인력) 부녀회원, 아동 5~10명당 1명의 인력 배치(일자리사업, 노인회·부녀회 등과 연계), 월 20만원 실비지원 ▶ (재원) 군비, 도시락 비용 일부 자부담
<p>E마을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대상/ 이용시간) 초등학생 대상 / 오후5시~저녁9시(월~금) ▶ (서비스 내용) 방과후 프로그램운영, 놀이 지원, 지역역사 알기, 다문화 이해, 청소년 밴드, 글쓰기, 생태교육 등 ▶ (공간) 초등학교에서 별도 설치한 독립 시설 ▶ (운영주체) 마을교육공동체, 입주자대표주민자치 협의 ▶ (인력) 00마을 0단지 대표회, 아파트 관리소장, 00마을 주민 21명을 마을교사로 임명 등 입주민 재능기부를 통한 자발적 참여로 구성 - 돌봄서비스제공자: 다수의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다수의 아동 돌봄 및 프로그램 진행 ▶ (재원) 교육청 예산 100%

5 시설 운영 관리

※ 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아동복지법」 참조

가. 운영 주체

- 센터의 운영은 지자체 직영 또는 위탁운영 가능
 - － 위탁 운영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 2의 규정을 준용

나. 운영위원회 설치

- 다함께 돌봄센터는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권익 향상을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함
 - ※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관련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지역별·시설별 탄력적 운영 가능(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고)

다. 운영 규정

- 다함께 돌봄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정을 관계법령 및 지침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하여야 함

제 4 장

다함께 돌봄센터 예산 지원 절차

1 국고보조금 예산 지원

가. 지원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에 근거함

법적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나.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다함께 돌봄 센터

다. 지원기간

- 최초 설치 시부터 운영 종료 시까지

라. 지원내역

● 설치비

- 시설 리모델링비 및 장비비 : 개소당 최대 지원액 5천만원(국비, 지방비 포함)

● 인건비

- 관리자 1인, 시간제 돌봄교사 2인 인건비 : 개소당 최대 지원액 49백만원 (국비, 지방비 포함)

Ⅰ 인건비 보조금 구성 내역 Ⅰ

▷ 관리자 : 월지급액* + [4대보험사업자부담금 + 퇴직적립금]

* '2018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 보육교사 3호봉' 기준

▷ 시간제 돌봄교사 : 월지급액* + [4대보험사업자부담금 + 퇴직적립금]

* '2018년 어린이집 보조교사' 기준(1일 4시간(주20시간) 근무, 월 832천원)

- 지자체는 관리자, 돌봄교사 월지급액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여건 및 채용인력의 자격증소지, 경력,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2 재정관리

가. 원칙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3조의제4항, 제34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규칙」을 따름
-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결산, 회계처리, 물품, 이용료, 후원금에 대한 관리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를 따름
 - － 단, 감사를 선임하여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를 운영위원회에 보고
 - ※ 감사는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음

나. 이용료

- 지역 여건 및 제공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결정 및 학부모 동의를 통해 이용료를 수납할 수 있음
 - － 이용료는 필수 활동과 특별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수납 가능하며, 월 10만원 범위 내 가능
 - 필수 활동은 급식 대체, 사이버 수업료, 교재비 등에 대해서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수납 가능하며, 이용 서비스에 따라 차등 부과 가능
 - 특별활동은 예체능 프로그램 참여(예, 어린이줄넘기, 어린이 요가 등), 현장체험비 등의 실비 이용에 대한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수납 가능
 - ※ 이용료에 대한 집행 내역은 반드시 학부모 대상 공지 및 감사 실시

제 5 장

다함께 돌봄 평가

1 목적

- 방과 후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었는지 효과성 검증
- 보조금 대상 시설로서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
- 지역 사회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 돌봄 및 마을 돌봄 제공 기관과 협력 체계가 명확하며 연계를 위한 협력 방안 마련
- 다함께 돌봄 및 센터 운영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2 준용 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4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3 개요

- (시설 평가) 평가 결과는 컨설팅과 연계하며, 보건복지부가 위탁하여 운영
 - 사회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기준, 보조금 대상 시설로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중심으로 평가
- (서비스 평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부모 모니터링단은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선정하며, 센터의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필수활동과 특별활동 등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결과 활용
 - 만족도 조사는 이메일을 통해 학부모의 돌봄 서비스 만족도 및 체감도 조사

제 6 장 협조사항

1 지자체

가. (보고) 지자체 제출 및 보고 의무

- 시설 관련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보고 체계 유지(수시, 시군구, 시도 → 복지부)
 - 시·군·구는 시설 관련 비리, 운영상 문제 발생, 언론보도 등의 문제 발생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로 신속 보고
- 외부 감사(감사원, 복지부 등) 및 내부감사에 대한 이행여부 파악을 위해 사후관리 조치결과를 상·하반기 복지부로 통보
- 시·군·구는 다함께 돌봄 센터의 운영상의 변경 사항 발생 시, 보건복지부 및 시·도에 공문을 통해 통보

나. (협조) 지자체 협조사항

- 시·군·구는 관내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다함께 돌봄 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돌봄 제공 기관 간 업무 협조 체제 긴밀히 유지
- 지자체는 다함께 돌봄 센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시설의 운영상황, 아동 보호·지도 실태, 안전점검, 예산집행 실태 등에 대해 현지점검 실시
 - 지자체 점검결과는 시도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제출(별도 공문시행)
- 지자체는 보조금 환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 준수하여 처리
- 지역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를 지원

- 아동 돌봄 제공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 조회, 건강검진 등 아동의 돌봄 수행에 적절한 인력인지에 대한 점검
 - － 활동교사 중 관련 자격증 미소지자는 기본 교육 이수 여부 확인

2 다함께 돌봄센터

가. (보고) 지자체 보고사항 협조

- 시설은 다함께 돌봄 센터 운영계획 및 운영위원회 설치 현황 제출
- 시설은 학부모 동의 및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사항에 대해 보고
 - － 센터 운영시간 및 종사자별 근무시간, 종사자 비상연락처
 - － 센터 이용료 수납 여부 및 금액, 수납 이용료 활용 계획
- 시설은 종사자 채용, 예산집행 등 지자체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인지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사항을 사전에 고지
 - － 종사자 이력서(사진 부착), 신원조회, 범죄경력 조회, 건강검진서 등
 - － 활동 교사 신원조회, 범죄경력 조회, 건강검진서 등, 자격증 소지, 교육 이수

나. (협조) 시설 협조사항

- 시설은 지자체 및 복지부에서 조사하는 각종 정책조사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향후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
- 관리자는 종사자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교육 안내, 교육여비 지급, 대체인력 투입 등의 조치 적극적 이행
- 아동별 돌봄 계획을 수립하여 타 아동 돌봄 제공기관과 연계 및 협력시 ‘아동 및 부모를 중심으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
- 시설은 공급자 중심의 지원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와 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위원회 참여 독려

서식 1

다함께 돌봄 신청서

다함께 돌봄 서비스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이내
이용아동 일반사항	성명	(한글)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학교/학년/반		휴대전화		
	건강상태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허약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 소				보호자 휴대전화	
보호자 긴급연락	성명		관계		생년월일
	성명		관계		생년월일
가정환경	주거형태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다세대주택 <input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기타()			
	거주상태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월세 <input type="checkbox"/> 기타()			
	돌봄 정도	<input type="checkbox"/> 맞벌이(부부 모두 전일제) <input type="checkbox"/> 맞벌이(전일제+시간제) <input type="checkbox"/>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아동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장애인 가정의 아동 <input type="checkbox"/> 교육급여 등 저소득 가정 아동			
돌봄욕구	필요 요일	<input type="checkbox"/> 월요일 <input type="checkbox"/> 화요일 <input type="checkbox"/> 수요일 <input type="checkbox"/> 목요일 <input type="checkbox"/> 금요일 <input type="checkbox"/> 토요일 <input type="checkbox"/> 일요일 <input type="checkbox"/> 방학·휴업 <input type="checkbox"/> 특정기간 <input type="checkbox"/> 비정기			
	필요 시간	<input type="checkbox"/> 상시 돌봄(시 분 ~ 시 분) <input type="checkbox"/> 일시 돌봄(신청일, 필요 시간 기재)			
기타 욕구 및 참고사항					
상기 아동에 대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하여 다함께 돌봄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인) 「개인정보보호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이용아동 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조회·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자(보호자) (인) 시·군·구청장 귀하					

서식 2 ▶ 다함께 돌봄 욕구 및 참여 조사

※ 본 서식은 다함께 돌봄을 신청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과 가족의 상황에 맞추어 돌봄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정보는 일체 외부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 동 자료는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고,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1. 다함께 돌봄 신청

1) 신청 아동

	이름	출생년도(4자리)	고유번호*
신청 아동 1	예) 홍길동	예) 2010	예) 01 (기관 작성)
신청 아동 2			
신청 아동 3			

* 「다함께돌봄 실태조사」 제출시 아동의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고유번호 활용

2) 보호자

	어머니	아버지	그 외 (관계: 할머니)
이름	예) 심청이	예) 홍길동	예) 홍길동
직장 및 고용 구분* (선택)	① 종일 근로 ② 시간 근로 ③ 자영업(고용주) ④ 프리랜서(비정기) ⑤ 기타(공부 등) ⑥ 무직	① 종일 근로 ② 시간 근로 ③ 자영업(고용주) ④ 프리랜서(비정기) ⑤ 기타(공부 등) ⑥ 무직	① 종일 근로 ② 시간 근로 ③ 자영업(고용주) ④ 프리랜서(비정기) ⑤ 기타(공부 등) ⑥ 무직
근무시간**	예) 9:00~18:00	예) 9:00~18:00	예) 9:00~18:00
출근 소요시간***	예) 30분	예) 030분	예) 30분
연락처	예) 010-000-0000	예) 010-000-0000	예) 010-000-0000
긴급연락순위	예) 1순위	예) 2순위	예) 3순위

* 직장 및 고용 구분은 돌봄 필요 정도와 돌봄 필요 시간 산출을 위한 것임.

** 근무시간은 일상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회식 등은 고려하지 않음)

*** 출근 소요시간은 돌봄 필요 시간 산출을 위한 것으로 편도 기준임.

2. 아동별 돌봄 수요 및 현황 조사

※ 본 서식은 개인별 돌봄 현황을 파악하고, 다함께 돌봄의 운영 시간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자녀가 이용하는 돌봄 현황과 돌봄이 필요한 시간을 정확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이용 현황

	학교 안			학교 밖		
	정규과정	방과후 학교	초등돌봄 교실	지역아동 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그 외 및 학원
월요일	9:00-13:00	13:30-15:00	15:00-17:00	17:00-20:00		
화요일	9:00-13:00		15:00-17:00	17:00-20:00		13:30-14:30
수요일	9:00-13:00	13:30-15:00	15:00-17:00	17:00-20:00		
목요일	9:00-13:00		15:00-17:00	17:00-20:00		13:30-14:30
금요일	9:00-13:00	13:30-15:00	15:00-17:00	17:00-20:00		
토요일		9:00-12:00			14:00-18:00	

* 「다함께돌봄」을 이용하기 전,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

2) 돌봄 필요 시간

	정기	비정기
아동 혼자 있는 시간	예) 오전 8:00-9:00	예) 간헐적 금요일 19:00~20:00
돌봄 필요 시간	예) 월~금 8:00-9:00 예) 월~금 19:00-20:00	예) 매주 금요일 16:00~19:00

3) 이용 시설 연계를 위한 정보

구분	시설명	담당자	연락처	연계시간
학교 안	학교	담임 이름	010-000-0000	불필요
	방과후학교	강사 이름	010-000-0000	불필요
	초등돌봄교실	전담사 이름	010-000-0000	불필요
학교 밖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이름	010-000-0000	월~금, 16:3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시설장 이름	010-000-0000	불필요
	학원(학원명)	원장 이름	010-000-0000	월~금, 13:30

* 「다함께돌봄」 전후 부모가 아닌 다른 성인에게 인계하는 경우 모두 작성

3. (돌봄 부담) 조사

※ 본 서식은 아동 돌봄 서비스 부담 및 돌봄 서비스 욕구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다함께 돌봄 사업의 제공 활동 및 서비스 결정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1) 경제적 측면

	학교 안 서비스 이용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학교 밖 서비스 이용 (지역아동센터, 학원 등)
이용하는 시설	예) 방과후학교 2강좌	예) 지역아동센터, 학원 1강좌
월 비용 부담	예) 방과후학교 (농구) 월 5만원 방과후학교 (축구) 월 10만원	예) 지역아동센터 월 5만원 학원(태권도) 월 10만원

2) 비경제적 측면

	시설에서 제공하기를 원하는 활동 및 서비스(지침 예시, 그 외 추가 가능)
필수 활동	예) 등교서비스, 오후 간식, 숙제 지도, 저녁식사 등
특별 활동	예) 또래 놀이, 신체활동, 즐넌기, 문화활동 등

4. (마을 돌봄) 참여 의사

※ 다함께 돌봄 사업은 아동과 부모,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운영됩니다. 이에 마을 돌봄에 도움을 주실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활동 교사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감사	모니터링
업무	아동에게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기적 활동 교사	학교 휴업일 등으로 아동 수가 갑자기 많을 때 일시 활동교사, 특기적성교사	다함께 돌봄 과정 및 운영시간 등 결정	수입 및 지출 결산 감사	예) 다함께 돌봄 서비스에 대한 평가
참여형태	예) 주1회 수요일	예) 목요일만 제외, 수시	예) 위원 참여	예) 감사 위원	예) 위원 참여
이메일	abc@hanmail.net	def@hotmail.com	ghi@gmail.com	jkl@naver.com	mno@empal.com

만족도 조사 참여	(휴대폰)	(이메일)
-----------	-------	-------

서식 5 아동별 돌봄 계획서

※ 신청시 작성하되, 부모의 필요에 따라 변경 작성할 수 있음.

아동별 돌봄 계획서	
아동 연번 (평가 활용)	학부모 동의 (서명)
1. 돌봄 필요성 (관리자 작성)	※ 서식 1과 서식 2을 참조하여 아동별 돌봄 필요 요일 및 필요 시간을 객관적으로 작성(학부모 욕구 그대로 작성)
2. 전반적인 돌봄 필요 시간 확인	※ 서식 1과 서식 2을 참조하여 시설 평균 운영시간 공지
3. 협의 조정 및 조정 가능성 검토	※ 타 돌봄 기관 이용 등과 관련해서 1의 내용 중 조정 가능시간 작성
4. 제공 서비스	※ 필수활동과 특별활동 등에 대한 만족 및 추가 서비스 욕구 작성
5. 아동 인계	※ 최종적인 아동 인계 대상(주 책임자, 부 책임자)
6. 간식 및 급식	※ 간식 및 급식 필요성, 알러지 식품 등 사전 정보 공유
7. 돌봄 계획	※ 돌봄 필요성 및 제공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